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75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9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김현아 · 이현재

김성원 · 이명수 · 정태옥

민경숙 · 윤영석 · 유기준

함진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,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54조 신설).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(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)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54조(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)</u>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</p>